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재신기술 활용 협조 요청

1. 평소 재난관리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해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방재신기술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및 관련부서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최근 방재신기술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3항, 신설)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방재신기술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방재협회 누리집(www.kodipa.or.kr) 참고

붙임 방재신기술 지정 현황 1부. 끝.



행정안전부 장관 인

수신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무관	정진경	시설사무관	송호권	재난안전산업	전결 2021. 7. 1.
				과장	김해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산업과-2013 (2021. 7. 1.) 접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4187 팩스번호 044-205-8928 / filmle07@mail.go.kr / 대한민국 공개